

편견 피해자를 위한 오리건 주 헌법 및 법적 피해자 권리

예시적 요약

Oregon Department of Justice's

CIVIL RIGHTS UNIT



책임의 한계 법적 고지

본 PowerPoint 파일에 담겨 있는 정보는 법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편견 대응 핫라인(Bias Response Hotline)은 편견 사건 또는 편견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 정보 공유 또는 이러한 자료 검토를 한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이 생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리건 주의 주 전체 편견 대응 핫라인

편견 대응 핫라인(비 응급 핫라인)

1-844-924-BIAS(2427)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240여 개 언어로 통역

모든 통화 연결 지원

언제든지 StandAgainstHate.Oregon.gov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피해자의 정의: 헌법 상의 정의

오리건 주 헌법 1조 § 42 (6)(c)

"피해자"는 기소 검사 또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범죄 행위의 결과 직접적인 금전적, 심리적 또는 물리적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정의: 법적 정의

[ORS137.007](#)

..."피해자"는 범죄 행위의 결과 금전적, 사회적, 심리적 또는 물리적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는 살인 또는 그 정도에 관계 없이 시신을 훼손한 경우, 고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 그리고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그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를 포함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피의자는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 법 집행 당국에 신고

(엄격하게 말해 권리는 아님)

- 피해자는 어떤 일이 편견 범죄인지, 편견 사건인지 여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 언제, 어디로,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 보고서 또는 사건 보고서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 동일한 가해자에 대해 추가적인/향후 케이스에서 편견 동기의 증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는
 -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케이스 간 패턴을 식별하거나 케이스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편견 사건의 경우 경찰에는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거나 그 신분을 알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선택 사항: 법 집행 당국에 신고한 후

(권리 아님)

- 주 정부의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CVCP\)](#)이 제공하는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범죄** 관련 의료 치료, 상담 및 장례식 청구 금액에 대한 보장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RS 147.005)
- 주 정부의 [CVCP\(Crime Victim Compensation Program,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가 제공하는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편견 사건** 관련 상담 비용에 대한 보장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영주권이 없으면서 수사 또는 기소에서 법 집행 당국에 도움을 제공하는 범죄 활동의 피해자는 U 비이민자 신분(U Nonimmigrant Status), 또는 U 비자(U Visa)라고 하는 자격으로 미국에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및 폭력 보호 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 8 U.S.C. § 1184, 8 U.S.C. § 1101(a)(15)(U))

피해자의 선택 사항: 법 집행 당국에 신고한 후

(권리 아님)

-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일체의 형사 사건과 무관하게 증오 발언, 차별적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욕, 조롱, 위협, 욕설 또는 협박을 저지른 편견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 민사상 보호 명령('접근 금지 명령'이라고도 함) 발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RS 124.010)
- 편견이 스토킹(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접촉을 통해 피해자가 압박한 물리적 위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지난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일체 형사 사건과 무관하게 법원에 편견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스토킹 보호 명령 발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선택 사항: 지속적

(권리 아님)

- 편견이 스토킹(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접촉을 통해 피해자가 압박한 물리적 위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지난 9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14일 전 서면 통지서, 그리고 경찰 보고서, 보호 명령서, 유죄 판결 또는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한 등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위약금 없이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ORS 90.453)
- 편견이 스토킹(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접촉을 통해 피해자가 압박한 물리적 위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또는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성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최근에 이사했으며 아직 주소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주소 기밀 보장 프로그램(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에 가입을 요청해 모든 공적 서류에 대체 주소가 기입되도록 하고, 모든 일급 우편, 내용 증명 또는 등기 우편물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ORS 192.822)

피해자의 선택 사항: 지속적

(권리 아님)

- 개인에게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고/거주하고, 일하고, 학교에 다니고, 투표하고, 가게 및 공공 공간을 출입 및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 공정주거권리법[Federal Fair Housing Act],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재활법[Rehabilitation Act],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임대주는 편견 범죄 또는 편견 사건("극도로 악질적인" 행위)의 가해자를 24시간 전 통지를 통해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ORS 90.396 (1)(f)(d) 및 (4))
- 가정폭력/성폭행(DV/SA), 괴롭힘 또는 스토킹 때문에 법 집행 당국 또는 법적 도움을 받거나, 의료적 치료 또는 상담을 받거나, 피해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사하거나, 또는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직장에서 합당한 휴가를 이용하는 것. (ORS 659A.272)
- 피해자가 추가적인 DV, SA, 스토킹 또는 협박으로부터 개인 또는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퇴사하는 것 외에 합당한 범위에서 이용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 실업 수당 수령 자격을 박탈 당하지 않는 것. (ORS 657.176(12))
- 피해자가 적격 근로자이고 고용주가 보장 대상 고용주인 경우 형사 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내는 것. (ORS 659A.192.)

피해자의 권리: 법 집행 당국에 신고

-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장애, 범죄 이력, 또는 시민권/서류 신분에 관계 없이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제공 받을 권리.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14th Amendment's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U.S. Constitution])
-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오리건 주 헌법 1조, § 42(1)(g); ORS 147.417(1), ORS 147.417(4)(a))
- 편견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주 전체 편견 대응 핫라인(**Bias Response Hotline**) 또는 적격 현지 피해자 서비스(일단 지정되면)에 연락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권리. (ORS 147.380 (2))

피해자의 권리: 형사 사법 절차 전체에 걸쳐

- 법 집행 당국(LE) 및 형사 사법 절차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존엄성을 인정 받고 존중 받을 권리.**
(오리건 주 헌법 1조 § 42 (1))
- 경찰, 병원, 공립 학교 및 그 외에 연방 지원금을 받는
정부 프로그램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자신이
요청하는 언어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모든
자료 번역본**을 받을 권리. (민권법 타이틀 6[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증언을 하든, 또는 단순히 심리에 입회해 경청하든
법정 내에 무료 통역사를 둘 권리. (ORS 45.275, ORS
45.285(3), ORS 419C.285(4))
- 15세 이상인 경우 신고/법 집행/형사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 대리인**(친구/같은 편/지지해
주는 사람)을 동반할 권리. 대리인은 미성년자나 범죄
즈이이어서는 안 됩니다. (ORS 147.425)

피해자의 권리: 형사 사법 절차 전체에 걸쳐

- 범죄 피의자, 또는 범죄 피의자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에게 의한 **면담, 선서 증언 또는 그외 증거 개시 요청을 거부할 권리.** (오리건 주 헌법 1조 § 42 (1)(c))
- 공개 법정에서 열리는 모든 심리의 **전사 기록(작성된 경우)을 받을 권리.**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 42 (1)(e), ORS 147.419, ORS 419A.256)

피해자의 권리: 형사 사법 절차 전체에 걸쳐

- 특정 심리와 관련해 증언을 하고, 통지를 받고, 참석하고, 발언할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형사 사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선택할** 권리.
 - 참고: 개인적으로 받는 소환장은 강요할 수 있는 법원 출두 명령입니다.
- 형사 사법 절차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권리.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 42 (1))
- 형사 사법 절차 전체에 걸쳐 **피의자로부터 합당한 수준으로 보호 받을** 권리. (오리건 주 헌법 1조 § 43 (1)(a))
 - 사건 보류 중에 피의자가 석방되는 경우 피해자와 일체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 받을 권리. (ORS 135.970 (4)(a), ORS 419C.276(4))

피해자의 권리: 형사 사법 절차 전체에 걸쳐

- 요청 시, 피의자가 출석할 때 공개 법정에서 열리는 절차의 **중대한 단계에 대해 사전에 통지를 받고** 자신도 참석할 권리.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 42(1)(a); ORS 419C.273(1)(a))
 - 석방 심리
 - 예비 심리
 -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 답변
 - 재판
 - 재판 일정 조정 관련 심리
 - 증거 배제 또는 제외 심리
 - 선고
 - 선고 합의 연기 관련 심리
 - 배상 심리
- 혐의, 유죄 판결, 명령 또는 판결의 수정, 기각 또는 무효화 신청 또는 진정에 관한 심리
- 성범죄자 신고 요건 구제를 위한 심리
-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거 행동 또는 복장의 증거 채택에 관한 심리
- 보호 관찰 위반 또는 철회(A급 경범죄 및 중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 형사 사법 절차 전체에 걸쳐

- 아래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심리에서 발언할 권리:

- 석방 심리
- 예비 심리
-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 답변**
- 재판
- 재판 일정 조정 관련 심리
- 증거 배제 또는 제외 심리
- **선고**
- **선고 합의 연기 관련 심리**
- 배상 심리

- **혐의, 유죄 판결, 명령 또는 판결의 수정, 기각 또는 무효화 신청 또는 진정에 관한 심리**
- 성범죄자 신고 요건 구제를 위한 심리
-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거 행동 또는 복장의 증거 채택에 관한 심리
- **보호 관찰 위반 또는 철회**
- **유죄 판결 후 심리**
- **정신과 보안 심사 위원회(PSRB) 심리**
- **특정 청소년 심리(구금, 보호소, 배정, 처분, 배상 및 포기 심리)**

피해자의 권리: 형사 사법 절차 전체에 걸쳐

- 요청 시 체포, 혐의, 유죄 판결 및 수감 등 **피의자의 전과**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 42 (1)(b), ORS 147.421, ORS 420A.122)
- 요청 시 피의자의 **구금 석방**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 (ORS 147.421 (1)(d))
 - 매일의 피해자 정보와 통지(VINE)을 기억하세요!
- 이전 법정 석방 결정을 통보 받지 못했거나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요청 시 법원에 **석방 결정 재고**를 청할 권리. (ORS 147.508)
- 석방 심리에서 발언할 권리.

피해자의 권리: 선고

- 유무죄 발언 변경 및 선고에 대해 사전 통보 받을 권리
- 유무죄 발언 변경 및 선고 시 발언할 권리
- 피의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 재산상의 손해, 또는 범죄의 결과 발생한 의료비를 상황/지불하라는 명령을 발령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 42 (1)(d), ORS 137.106(1), ORS 419C.450(1)(a))
- FYI참고로: 법원은 "부상을 초래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처벌로" 법으로 정해진 배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적 벌금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범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그러한 부상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RS 137.101, ORS 419C.459)
- 형사 피의자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유죄 판결, 선고, 수감 및 신체적 구류로부터의 향후 석방에 관해 정보를 취득할 권리.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 42 (1)(b))

피해자의 권리: 유죄 판결 후

- 요청 시, 항소에 대해 통보를 받고 항소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대인 범죄 및 강도로 한정). (ORS 147.433(1)(b))
- 요청 시, 유죄 판결이 유죄 판결 후 구제 탄원 또는 유죄 판결 후 DNA 검사 대상인 경우 통보 받을 권리. (ORS 147.433(1)(c))
- 요청 시 심리, 조건부 석방, 방면 또는 탈출을 포함해 GEI(Guilty Except for Insanity, 정신 이상으로 인한 예외)에 대한 정신과 심사 이사회 절차(Psychiatric Review Board Proceedings)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 (ORS 161.326(1))
- 요청 시, 가석방 위원회(Board of Parole) 및 출소 후 감독(Post-Prison Supervision) 심리에 대해 통보 받을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

- 헌법상 권리의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에 대한 권리.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 § 42(3)(a), 43(5)(a), ORS 147.500-147.533)
- 권리 침해에 대한 청구 제기를 원하는 경우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 [오리건 범죄 피해자 법률 센터\(Oregon Crime Victims Law Center\)](#),
 - 오리건 법무부(Oregon DOJ) [범죄 피해자 권리 프로그램\(Crime Victims' Rights Program\)](#),
 - [여기서 법원 제출용 양식을 확인](#)하세요

Civil Rights Unit이 무슨 일을 하는
지 궁금하세요?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우하세요!
 

Oregon Department of Justice's

CIVIL RIGHTS UNIT